군산영광여고 학생회 및 대의원회 규정

제1조【목적】 본 규정은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및 대의원회 라고 칭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자치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구성】

- *군산영광여고 학생회 및 대의원회는 반드시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성해야한다.
- (단. 질병 및 기타 사유가 인정되는 휴학 사유는 예외한다.)
- *학생회와 대의원회를 중복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1. 학생회

- 1)학생회는 전교회장 1명, 전교부회장 3명을 바탕으로, 총무, 종교부, 행사기획부, 미디어부, 방송부, 환경부, 음악부, 체육부, 과기부를 두고 학생회를 구성한다.
- 2)각 부서별 2명 부장과 차장을 두며, 부서별로 총 28명의 임원을 선발한다.
- 3)부장 및 임원 선발 기준은 당해 학생회장단과 대의원회의 협의를 통한 기준으로 선발한다.

2. 대의원회

- 1)대의원회는 학생회장단(전교회장, 전교부회장)을 장으로 두며, 각 학년 학급의 실장, 부실장으로 본 회를 구성한다.
- 2)학기 변경에 따른 실장, 부실장 변동 시 대의원또한 변경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【역할 및 임무】

1. 학생회

- 1)학생회는 학생회장단과 학교의 전반적 행사 및 각 부서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획하고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한다.
- 2)각 부서의 행사 및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타 부서도 도움을 제공한다.

2. 대의원회

- 1)대의원회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학교생활규칙, 개선사항, 등을 다루며 학생자치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한다.
- 2)학교의 긴박한 의견수렴 상황이나 전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학급을 대표하여 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4조【선발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회 및 대의원회에 선발될 수 있다.

1. 학생회

- 1)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,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자.
- 2) 생교위의 처리 대기 및 생교위의 징계 사유가 없으며, 학폭위의 처분 및 징계 사유가 없는 자.

2. 대의원회

- 1)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,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자.
- 2)생교위의 처리 대기 및 생교위의 징계 사유가 없으며, 학폭위의 처분 및 징계 사유가 없는 자.
- 3)각 학급의 실장, 부실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자. (실장, 부실장의 공석 시 담임교 사의 추천을 받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)

제5조【선발 시기】

1. 학생회

- 1)학생회 선발 절차는 전해 회장단 교체 전 담당 교사 및 부장 교사와 협의를 통해 장소 및 선발 일정을 협의 후 진행한다.
- 2)담당 교사 및 부장 교사는 학생회 선발 일정을 확인 후 적절한 선발 장소 및 일정을 학생회장단에게 안내 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.

제6조【선발의 결격 사유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각 회에 선발될 수 없다.

1. 학생회

- 1)전학, 편입한 지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.
- 2)기타 교무회의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(출석미달, 징계 등의 부적절한 사유).
- 3)당해 및 다음해 학생회 임원 중 교칙 위반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.

2. 대의원회

- 1)전학, 편입한 지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.
- 2)기타 교무회의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(출석미달, 징계 등의 부적절한사유).
- 3)당해 및 다음해 학생회 임원 중 교칙 위반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.
- 4)위와 같은 경우 4조 2번 3항에 따라 진행한다.

제7조【임기】

- 1. 학생회
 - 1)학생회의 임기는 회장단 직무시행시기인 당해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 임원교체 전까지 임기를 둔다.
- 2. 대의원회
 - 1)대의원회는 각 학급의 임원 선출 기준 및 임기 기준에 따른다.
 - 1)-①한 학급이 1년간 실장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 학급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1)-②한 학급이 학기당 실장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 학급 대의원 임기는 한 학기로 정한다.

제8조【자격 박탈 및 징계】학생회 및 대의원회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 박탈 및 징계에 처할 수 있다.

- ①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처분 및 징계처리를 받은 경우.
- ②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불필요한 언행으로 다수의 주의처리를 받은 경우.
- ③각 회의 구성원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행위.
- ④학교생활교육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
- ⑤학교폭력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⑥민원을 받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

제9조【기타】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안전인성인권교육부의 결정에 따른다.

본 규정은 최종 수정일 2025년 6월 2일 당일부터 시행한다.